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290 |
|----------|------|

제출년월일 : 2011. 7. .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2011.2.9 대통령령 제22661호)과 함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 2에 따라 “국내 여행자의 여비 증운임과 숙박비를 카드로 결재하고 정산해야 한다”는 규정을 국외 여행자까지 확대, 이에 따른 조례의 준용 사항 변경
(안 제5조 제1항)

3. 참고사항

- 가.근거법령 : 공무원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개정안
- 나.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합의 : 해당없음
- 라.기타
- (1) 입법예고(2011.5.12~5.31)결과: 의견사항 없음
- (2) 규제심사대상 : 해당없음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제5조 각 호외의 본문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의 2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u>공무원여비규정</u>」별표1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p> <p>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u>공무원여비규정</u>」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p> <p>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u>공무원여비규정</u>」을 준용하되, 「<u>공무원여비규정</u>」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p> <p>2. ~ 7. (생략)</p> |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u>공무원여비 규정</u>----- ----- ②----- ----- <u>공무원여비 규정</u>----- -----</p> <p>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 ----- <u>공무원여비 규정</u> ----- ----- <u>공무원여비 규정</u> ----- -----</p> <p>1. 제8조의 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2. ~ 7. (현행과 같음)</p> |
| | |

관계법령 발췌

□ 공무원여비규정[일부개정 2011.2.9 대통령령 제22661호]

- 제8조의 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국외 여행자만 해당하며, 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2.9>
- ②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주일 이내에, 국외 여행자는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2.9>
- 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